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18누12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237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9.
판 결 선 고	2019.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186,114,540원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판결서 제2면 제3행 ~ 제3면 제9행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B 내 [redacted]군 C 공장용지 5,553.4㎡(2014. 7. 1. [redacted]시와 [redacted] 구가 통합됨에 따라 '[redacted]시 [redacted]구 C'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6. 11. 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830,430,000원에 분양받아 2008. 10. 29.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9. 4.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았다[다만 원고는 재산세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 제112조, 청원군 군세 조례(2010. 12. 31. 조례 21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2013. 5. 20. 조례 제2293호로 개정되어 그 날부터 시행된 것) 제15조, 청주시 시세 조례(2014. 7. 1. 조례 제111호로 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것) 제15조에 따라 2011년분부터 2013년분까지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은 납부하여 왔다[1)].

다. 원고는 2010. 8. 13. [redacted]군으로부터 건축면적 1,362.46㎡, 연면적 2,655㎡으로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2010. 9. 10. 공사에 착공하였고,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 2층 공장 가동, 나동 2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1. 3.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5. 26.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2)]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았다(다만 원고가 2011년분부터 2015년분까지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납부하여 온 것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와 동일하다).

마. 피고는 2016. 10.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1)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이전에 존재하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던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제112조에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기존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세율 등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항목이 신설되었다.

2) 종래 지방세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지방세법뿐이었으나 2010. 3. 31. 전면개정되어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률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종래 지방세법의 과세 면제 및 경감 부분은 지방세제한특례법이 규율하게 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6. 10. 13.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186,114,5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3, 25, 26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서 별지 '관계법령'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제4 ~ 14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과 관련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과 관련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인데, 그 추징요건은 모두 '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②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내지 증여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추징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살펴본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하 6 ~ 1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추징처분은 위 각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당초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같은 법상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고, 추징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추징처분을 하는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6행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제10면 제2행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9. 4. 17.부터'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완납일인 2008. 10. 29.로부터'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제11면 하 11 ~ 5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내지 증여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업종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지방세 감면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8. 10. 29.로부터 3년 내인 2011. 10. 29.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므로, 2011. 10. 29. 이후의 사정, 즉 F연구원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실, 2011. 10. 29. 이후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은 취득세 감면요건과는 무관하다.

2) 원고가 주식회사 E, F연구원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용도인 일반공장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2012. 1. 27.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이전에는 정형외과 용품의 제작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공장을 통한 매출액, 재고자산, 원재료 매입 내역, 임금 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직원들의 퇴직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2012. 9. 1. 이후 생산을 하지 못하였고, 2012. 12. 1. 이후에는 직원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2012년보다 가동을 중단한 2013년의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야 한다.

3)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 채용상의 어려움 및 금융 위기 등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각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추징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피고는 면제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 사건 공장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8. 10. 29.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10. 29. 이전에 이미 2010. 9. 10.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1. 3. 28. 그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직접사용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추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3) 또한 갑 제14 내지 24, 27 내지 5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일로 보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1. 3. 28.로부터 3년 이내인 2014. 3. 28. 이전임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10. 29. 이전에 이미 제1심 판시와 같이 2010. 7.경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할 직원을 구하는 구인광고, 2010. 10. 7. 이 사건 공장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1. 2. 1), 2011. 9. 28. 주식회사 E과 제조업 품목신고 등 업무대행계약 체결, 2011. 6.경부터 신규직원 채용, 2011. 5.경 일부 설비의 구비 및 작업 진행 등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1. 11. 8. F연구원과 업무대행계약, 2012. 1. 27.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취득 및 의료기기 제조품목 신고, 2012. 10. 10. 구인광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2013년의 전기요금이 이전보다 많게 된 것은 원고가 사용하는 일반용 계약종별 전기요금이 2011. 8.에 4.4%, 2011. 12.에 4.5%, 2012. 8.에 4.4%, 2013. 1에 4.6%, 2013. 11.에 5.8% 각 인상된 것에[3] 기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3)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제도 · 약관-전기요금제도-일반현황-전기요금개정 추이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5.js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각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의 위 추징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관해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고진흥

판사 오상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부과처분

1. 토지([redacted]시 C 공장용지 5,553.4㎡)에 대한 취득세 등

가. 취득세(단위: 원)

구분	감면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 1,778일)	합계
취득세	16,018,030	3,203,600	8,544,010	27,765,640
농어촌특별세 (본세)	1,601,800	320,360	854,400	2,776,560
계	17,619,830	3,523,960	9,398,410	30,542,200

나. 등록세(단위: 원)

구분	감면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록세 20%, 지방교육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 1,778일)	합계
등록세	16,018,030	3,203,600	8,544,010	27,765,640
지방교육세	3,203,600	320,360	1,708,800	5,232,760
계	19,221,630	3,523,960	10,252,810	32,998,400

다. 재산세 등(단위: 원)

년도	과세구분	공시지가	과세표준 (공시지가×면적×70%)	재산세	교육세	부과세액
2009	종합합산	170,000	660,854,600	3,054,270	610,850	3,665,120
2010	종합합산	170,000	660,854,600	3,054,270	610,850	3,665,120
2011	분리과세	175,000	680,291,500	1,360,590	272,110	1,632,700
2012	분리과세	175,000	680,291,500	1,360,590	272,110	1,632,700
2013	분리과세	177,000	688,066,260	1,376,130	275,220	1,651,350
합계				10,205,850	2,041,140	12,246,9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2. 건물{[redacted]시 [redacted]구 C 가, 나동(도로명주소: [redacted]시 [redacted]구 U) 건축면적 1,362.46㎡, 연면적 2,655.5㎡}에 대한 취득세 등

가. 취득세(단위: 원)

구분	감면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 1,778일)	합계
취득세	60,143,200	12,028,640	16,166,490	88,338,330
농어촌특별세 (본세)	4,295,940	859,180	1,154,740	6,309,860
지방교육세	3,436,750		923,790	4,360,540
계	67,875,890	12,887,820	18,245,020	99,008,730

나. 재산세 등(단위: 원)

년도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70%)	재산세	교육세	부과세액
2011	1,050,207,000	735,144,900	1,837,860	367,570	2,205,430
2012	1,071,531,000	750,071,700	1,875,180	375,030	2,250,210
2013	1,055,538,000	738,876,600	1,847,190	369,430	2,216,620
2014	1,116,844,500	781,791,150	1,954,480	390,890	2,345,370
2015	1,095,520,500	766,864,350	1,917,160	383,430	2,300,590
합계			9,431,870	1,886,350	11,318,220

3. 합계 세액

총 186,114,540(원) = 30,542,200 + 32,998,400 + 12,246,990 + 99,008,730 + 11,318,22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9924호,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 제112조는 그 후 현재까지 동일하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청원군 군세조례(2010. 12. 31. 조례 제2141호로 전문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 청원군 군세조례(2013. 5. 20. 조례 제2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 청주시 시세 조례(2014. 7. 1. 조례 제111호로 제정된 것, 이후 2016. 5. 4. 조례 제511호로 전부개정될 때까지 아래 제15조 규정은 동일하다)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 청주시 시세 조례 부칙(조례 제111호,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9호 청주시 시세조례, 청원군 군세조례는 폐지한다.

-끝-